

자활기업의 창업 특성과 창업모형에 관한 연구

김재호

청운대학교 융합경영학부

e-mail:jaehokim@chungwoon.ac.kr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and the start-up model of self-support

Jae-Ho Kim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활기관의 창업 특성과 창업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시기이며, 사회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일자리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주체중 하 나이지만 사회복지와 중복되는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는 자활기관의 창업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자활기업의 주체가 취약계층이며, 자활기관 및 자활기업의 설립 목적은 참여자의 탈 수급이다. 이는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구별된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취약계층이 수혜자 이지만 자활기업에서는 취약계층이 제공자이면서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자활기업의 창업특성은 자활기관의 포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bottom-up 방식으로 상향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자활기업의 사업 도메인 때문에 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스타트업을 넘어서는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이다.

1. 서론

자활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역 빈민운동을 중심으로 자조적 생산공동체·협동조합의 시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 시작된 생산공동체운동의 과정을 거쳐, 2000년대 국민기초생활법을 기반으로 한 자활공동체로 변화되었다.[1]

자활공동체의 조직은 중앙조직으로는 자활복지개발원이 있으며,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광역자활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별로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각 지역자활 및 광역자활에서는 참여주민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유형을 보면 1단계로 사업단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단은 그 유형에 따라 시장형 사업단과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나누어진다. 보통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서 출발하여 시장형 사업단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일정 기간 후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시도하여 탈 수급 및 일자리 창출의 사업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자활기관의 창업모형은 국내의 타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확연하게 구분되며, 체계적이라고 판단된다. 자활기관은 발굴 및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며 참여자의 기초적 역량과 사업타당성 검토의 창업활동을 하고, 이후 사업성이 검증된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모형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외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여 동기 부여를 하고 있으며,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기자재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되어지고 성장한 자활기업들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경제 초기의 기틀을 닦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을 받고 있다. 자활기업 자체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성 주체이지만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활기업이 두 개의 인증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활기업의 인증만으로는 보편적인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활기업의 창업 방식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자활기업 창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창업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보편적인 지원제도 안에서의 성장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자활창업모형

2.1.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단 폐지를 할 수 있다. 단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이 가능하다.[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중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사회서비스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업종은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빨래방 등이며, 참여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일반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자상위자)이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 기간은 사업단 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야 한다.

2.1.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여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이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 중 최근 6개월 또는 1년 간 매출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시장진입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장진입형 중 2년 내 연 매출액이 사업비의 30%를 넘지 못하면 사업은 다시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되어진다.

2.3. (예비)자활기업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아야 한다.

자활기업의 특징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설립주체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설립절차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른다.

예비자활기업은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이며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예비자활기업 지정 후 12~24개월 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조기창업도 가능하다.

광역자활기업은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이는 자활사업의 확대로 광역단위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고, 기초 단위별 사업 추진의 제약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함이다.

자활기업의 인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3]

[표 1] 신청서류

	신청서류
2016년	①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②사업계획서(향후 매출 계획 포함), ③최근 3월간의 매출 실적, ④예산계획서(창업자금 포함), ⑤자활기업의 정관 및 취업규칙*, ⑥사업자등록증, ⑦창업전 교육 수료증, ⑧(필요 시)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

2.3. 자활기업 창업 모형 및 특징

자활 창업의 프로세스는 사회서비스형에서 출발하여 시장진입형으로 전환하고 이어서 예비자활기업의 단계를 거쳐 자활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자활기업과 같은 창업제도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4]

[표 2] 자활 창업모형

발전모형	특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매출액 10%/사업비 모법인 내 사업단
↓	
시장진입형 사업단	매출액 30%/사업비 모법인 내 사업단
↓	
(예비)자활기업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조합형 구성 독립사업자
↓	
(예비)사회적기업	법인, 매출 및 취약 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행

자활기업 인증 시 법적 조직구조로 개인사업자의 형태도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주체의 법인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자활기업의 인증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주체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게 하는 2종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활기업 자체로 사회적경제 주체의 규모와 자격을 갖추는데 미흡한 조건이 되고 있다. 자활기업은 개인 기업으로 설립하면서도 정관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의 기본적인 내용은 협동조합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봐서라도 이 부분은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탈 수급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활기관의 창업 모형과 그 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활창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자활기관 포괄적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아이템의 발굴, 육성, 인큐베이팅, 창업, 스케일업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여자 발굴과 취업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다..

둘째, 자활기관이 창업 모형은 Bottom-Up 방식이다. 사회서비스형의 사업단의 기준인 사업비 대비 매출액 10%기준으로 출발하여 시장형 30% 그 이상인 경우 자활기업으로 전환하게 모형화 되어 있다. 이는 자활참여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 자체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자활창업의 아이템은 기술적이고 혁신적이라기 보다는 생활 밀착형, 노동집약형 업종이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에서 많은 자활기업들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활기업 창업 시 개인사업자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자활기업 창업모형은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매우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창업 후 스케이업(Scale-up)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따라서 자활기업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활기업 인증 후 추가 성장을 위해 별도의 법인전환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해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영역과의 중복 때문에 창업 역할에 대해 비교적 주목을 덜 받는 자활기관의 창업 특성과 창업모형에 대한 고찰이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후 초기 사회적기업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연구자의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특히 자활기업의 창업활동에 연구자의 관심과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경희, 백하영.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특성 비교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6권 2호, pp.115-145, 2019.
- [2] <http://www.kdissw.or.kr>
- [3] <http://www.law.go.kr>
- [4] 서광국. "자활기업의 2.0을 위해서는 자활기업의 발전 경로의 명확화 필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pp.163-166. 2019

김재호 (Jae-ho Kim)



[정회원]

2020년 06월 청운대학교 창의융합
대학 융합경영학부 조교수
2013년 08월 중앙대학교 박사(창업
경영)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창업전략, 창업정책